「환경처」어떻게 달라지나

편집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1월4일부터 새로운 환경정책을 펼쳐갈 「환경처」가 출범했다.

새롭게 펼쳐갈 「환경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되며, 기획관리실, 조정평가실등 2실4국4관21과 10담당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바뀌는 「환경처」의 기구표와 각부서의 관장업무내용 및 국립환경연구원과 6개지방환경청의 기구표를 소개한다. (편집자 註)

<환경처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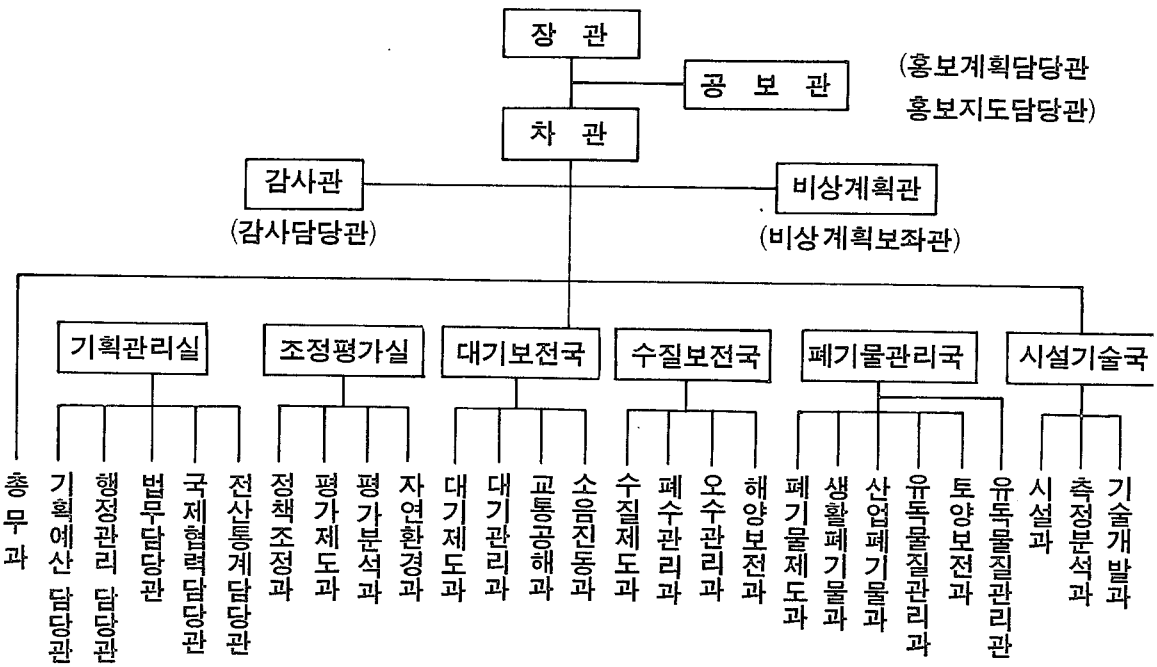

<각부서별 관장업무내용>

★ 공보관

1.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
3. 환경보전 홍보기법의 개발과 홍보자료의 발간.보급
4.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자원
5. 환경보전홍보에 관한 민간단체의 지원 및 협조
6. 기타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 감사관

1. 사정업무에 관한사항
2. 환경처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5. 다른기관에 의한 환경처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비상계획관

1.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 통제. 조정 및 확인
2. 정부의 비상훈련
3. 환경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 기획관리실

▲ 기획예산 담당관

1.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배정
3. 예산의 운영 및 결산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행정관리담당관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행정관리 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각종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 정리

▲ 법무담당관

1. 법령안의 심사
2. 법령의 질의 및 해석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 업무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한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담당관

1.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기타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
2. 주요국가 및 인접국가간의 환경정책 및 기술에 관한 협력
3.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 참가지원
4. 해외연수. 자문사업. 공무원파견등 환경전문인력의 양성
5. 해외 홍보활동, 외국의 환경관계 간행물구입 및 그 안내
6.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 전산통계 담당관

1. 환경통계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각종 통계의 조사 및 공표
3. 환경업무전산화 계획의 수립.추진
4. 국내외 환경정보의 수집. 정리 및 관리
5. 환경연감 발간

● 조정평가실

▲ 정책조정관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4. 환경보전분야 지방행정 지도.감독업무의 총괄
5.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계획의 종합.조정
6. 환경보전위원회의 운영
7. 환경관리공단의 지도.감독

8. 기타 실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평가제도과

1.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2.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기법의 개발
3. 국토이용계획변경. 농공지구 협의등 관계부처간의 협조
4.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5.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 평가분석과

1. 도시계획수립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3. 도로 및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4. 수자원개발사업 및 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5. 간척사업 및 관광단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6. 체육시설 및 관광단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7.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 자연환경과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
2. 자연생태계의 조사 및 연구계획의 종합. 조정
3.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및 특정 야생동. 식물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
4. 자연생태계 피해기준의 설정
5. 생물종의 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조수 및 동. 식물의 생태관리
6.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 및 대책연구

● 대기보전국

▲ 대기제도과

1. 대기보전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환경기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대기부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총량 규제 업무
4.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 기준설정
5. 연료사용등의 규제
6. 대기오염물질의 지정
7.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대기오염도의 평가
8. 지구대기보전에 관한사항
9.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10.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대기관리과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감시 및 단속업무의 종합. 조정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지도. 감독
4.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5. 악취규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6. 악취발생 물질의 범위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7. 악취배출시설의 규격설정 및 감시. 단속
8.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사항
9.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의 승인과 방지시설 설치의무의 면제승인

▲ 교통공해과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의 허용기준 설정
3. 자동차 연료의 사용제한 및 연료 첨가제에 관한사항
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의 개선명령에 관한사항
5.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6.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에 관한사항
7.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방지장치의 결함시정에 관한사항
8.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방법에 관한사항

★ 소음 진동과

1. 소음. 진동 규제대책의 수립
2. 소음. 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소음. 진동 규제지역의 지정에 관한사항
4. 소음. 진동 방지시설의 규격설정
5. 소음. 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6.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단속
7. 소음규제지역내의 공사에 대한 작업시간 및 소음방지시설 기준 등의 설정
8. 방음력 및 소음. 진동 측정기기의 규격설정
9. 소음. 진동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 수질보전국

▲ 수질제도과

1. 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수질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총량규제
4.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5.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6.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평가
7.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폐수관리과

1.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의 종합. 조정
3. 폐수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 감독
4. 수질오염원의 조사
5.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6. 수질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사항
7. 자가방지시설설계. 시공의 승인과 방지시설 설치의무의 면제승인

★ 오수관리과

1. 생활오수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2.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 조정
3.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설치에 관한 지도. 감독
4.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5.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6. 공중변소의 정비 및 확충계획의 수립
7. 하천. 호수등 공공수역의 오염행위에 대한 규제

▲ 해양보전과

1.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해양오염감시체제 및 방제기법의 개발
3. 해양오염원의 조사 및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규제
4. 연안오염 특별관리 해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사항
5. 하천으로부터의 해양오염물질의 유입규제에 관한사항
6. 해역별 하수수질환경기준의 설정
7. 관계행정기관의 해양환경업무에 관한 총괄. 협조
8.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제협약에 관한사항

● 폐기물관리국

▲ 폐기물제도과

1.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의 수립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 시행
3.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방안 연구 및 지원
4. 자원재생업의 육성. 지원
5.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지도. 감독
6. 기타 국내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생활폐기물과

1. 일반폐기물(분뇨를 제외한다. 이하같다)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업무
4. 일반폐기물처리의 허가 및 지도. 감독
5. 쓰레기처리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승인
6. 쓰레기처리 시설설치. 운영에 관한사항
7.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사항

▲ 산업폐기물과
1. 산업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 산업폐기물처리방법 및 기준설정에 관한사항
3.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 감독
4.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
5. 산업폐기물 발생 감소대책에 관한사항
6.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사항

★ 폐기물관리과
1.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2. 화학물질의 심사기준 설정
3.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안전성 시험 및 심사에 관한사항
4. 화학물질의 신고대상 선정
5. 화학물질의 제조등의 제한에 관한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사항
7. 화학물질심사단의 운영 및 관리

▲ 토양보전과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중 중금속 농약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및 검사
3. 농작물의 오염방지대책과 재배제한기준의 설정
4.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5. 지하수 보존과 지반침하 방지대책의 수립
6. 농약 기타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에 관한 대책의 수립
7. 오염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제한 및 오염농작물 폐기조치에 관한사항
8. 오염농지의 복토. 삭토에 관한사항

◎ 시설기술국

☆ 시설과
1.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위한 중. 장기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
2.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에 대한 기술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자원
4.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을 위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공고
5. 공단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6. 농공지구 오.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7. 설계용역과 공사계약의 발주 및 사후관리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측정분석과
1. 환경오염의 측정. 분석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2.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및 소음. 진동 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3. 환경오염 공정시험방법의 제정. 운영
4. 폐기물의 종합분석 및 분류기준의 개발
5. 측정분석 정도의 관리
6.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7. 측정분석장비 수습계획의 종합. 조정 및 운용지침서 작성
8. 측정분석장비 구매업무의 총괄

☆ 기술개발과
1.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방지기술의 개발
2. 폐기물처리기술의 개발
3.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구조기준 및 표준시방서 제정
4. 폐기물처리시설 구조기준 및 표준시방서 제정
5. 소음. 진동 반사광방지기술의 표준화
6. 환경오염방지기술정보의 제공
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감리

8. 환경기술 감리단의 운영. 관리

(● 은 각국·관의 표시이고 ▲은 각과의 표시이며 ★은 신설 또는 재구성된 과의 표시를 나타낸것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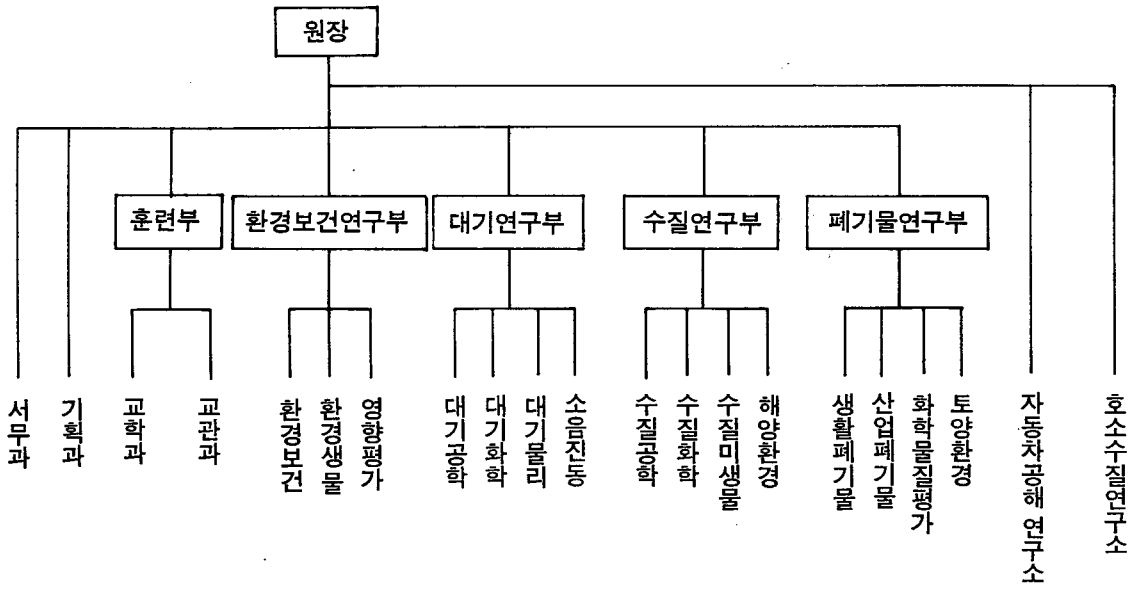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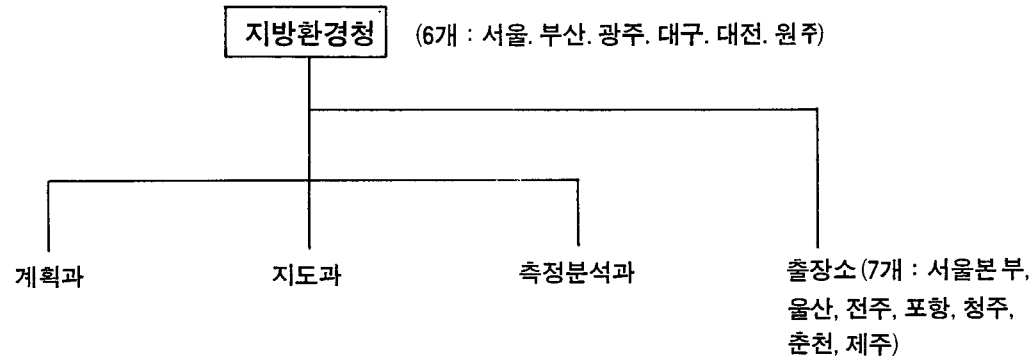
<지방환경청>